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관한 고찰*

김 은 수**

I. 서 언

2016년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야구장내 맥주 판매 규제에 관한 해프닝을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야구장에서 이동식 맥주판매를 하는 이른바 ‘맥주보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이 야구장내 판매행위를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야구위원회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규제의 취지는 허가된 장소인 영업장에서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는 주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1982년 이래 35년간 계속해서 이어져온 프로야구 관람문화에 맥주 판매가 허용되었는데, 갑자기 청소년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주류판매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즉 관람문화의 규제로 인식되어 프로야구 관람객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결국 식약처는 사안을 재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가능한 해석범위에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말했다.¹⁾ 그런데 국세청과 식약처에서 제시한 의견이라면 맥주보이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규제의 관점이 아니라 야구장에서 이동식 맥주를 구매하였던 관중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 본 사건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사회에서 우선시되는 관행과 법률과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일인 것이다. 이처럼 35년간 행해진 관행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경제생활과 관련한 제도를 바꾸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난제라 할 수 있다.

* 투고일자 : 2016. 4. 26 심사일자 : 2016. 6. 20 게재확정일자 : 2016. 6. 24

** 대구가톨릭대학교, CU인재학부 · 교위공직자전공 시간강사, 법학박사.

1) KBS News, “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 방침”, 2016년 4월 21일자 뉴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7330>>.

본 연구의 주제인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실제로도 우리는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것보다 현금계산을 더욱 선호함을 알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회원 계약에 따른 수수료도 문제 되겠지만, 결제금액이 신용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통보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²⁾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자는 취지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고에서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의무 미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및 소득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³⁾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사업자가 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법에서는 납세 의무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⁴⁾와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현금거래를 할 경우 정확한 소비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투명한 거래질서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하여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II.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한 일반론

1.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도입의 배경

우리의 경우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고, 근거과세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902면.

3) 일반소비세이기 때문에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똑같이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재화나 용역을 똑같이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적 효율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optimal taxation 이론이 경제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최적과세론은 논외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존재근거는 부와 소득의 재분배라는 공평을 희생하면서 세무행정의 효율을 좇는 데 있다고 본다. 이창희, 「세법강의」 제14판, 박영사, 2016, 973-976면.

4) 종래 가산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가산세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는 본세보다 더 많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006년 12월 30일 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한도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고 있다.

시행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신고납세제로는 자의에 의하여 임의로 계산서발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거 위장거래, 가공거래, 매출의 누락과 같은 부당거래에는 세금계산서의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였다. 1999년 정부는 신용카드의 확산과 함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면 거래대금에 대한 결제가 금융기관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과세표준이 포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999년 상반기 219개 업종 31,344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가맹점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행정지도⁵⁾를 펼친바 있으며,⁶⁾ 2000년에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상향하였다. 2003년에는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에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3에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변호사 등의 고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막기 위해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까?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의해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하고, 유추적용 및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만 해석가능한지의 문제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위반이 될 수 있다.⁷⁾

위 사건은 2015년 11월 27일 2심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국제청에서 대법원에 항고를 한 케이스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16년 3월 23일, 대법원 1부는 계좌이체 거래를 현금거래로 볼 수 있느냐의 관하여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비자로부터 은행계좌로 대금을 받는 방식중 하나이며, 현금

5) 행정지도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박균성), 행정주체가 조인·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김동희)등으로 설명된다. 이동식외 3인, 「행정법총론」 제4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456면.

6) 한편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신용카드 사용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당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신용카드 복권제도는 실효성이 미미해 2006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현금영수증복권에 집중하였다.

7) 정부는 과세표준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개인 고소득자의 세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업종에 대해 간이과세자를 배제하였다. 2010년 말 세법개정에서는 해외탈루소득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2010년 말 세법개정에서는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였다.

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도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수익과 비용

소득세는 자연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이며, 과세대상은 소득이다.⁸⁾ 광의의 소득세는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구분되며, 우리의 세법은 법인소득세를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부르고 있다. 가령 모친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는 위 자금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모친의 아들에 대한 증여로 인정되어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제한적으로 과세하며, 소득원천설에 따라 법률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보기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에 대하여는 경제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소득으로 보아 법의 개정 없이도 과세소득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한다.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사업이란 개인이 영리목적에 가지고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의 활동이다. 즉 사업소득은 ①영리목적성, ②독립성, ③계속·반복성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3. 과세표준에 관한 영미의 과세제도

가. 미국의 과세제도와 NRP

먼저 내국세법원 법원성을 소개하자면 연방세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국세법이 고, 재무성의 규정, IRS(Internal Revenue Service) 규칙, 그리고 법원의 판례가 연

8) 현대 세법에서 세금 부과·배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지불능력이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목복수주의를 취하면서 소득·재산·소비 각 단계에 각각 다른 세목을 부과하고 있다. 이동식, 「일반조세법」 제3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7면.

방세법의 근간을 이룬다. 재무성의 규정은 법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며, IRS 규칙은 재무성 규정보다 법적 비중이 낮다. 세법 분쟁은 IRS 이의절차를 거치며,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해결하고 이는 전례가 된다. 대법원은 합헌성 여부 등 중요한 사례만 심의한다.⁹⁾

부가가치세와 같은 일반 소비세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거래와 결제가 융합된 영수증 수수관행이 잘 정착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도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간에 어떤 형태의 영수증이든지 거래 증빙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면 세무상 정규 영수증으로 제한 없이 인정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다양한 세목과 여러 종류의 납세자 그룹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¹⁰⁾

NRP는 어떤 업종의 신고성실도가 특히 낮은지, 어떤 유형의 세금탈루가 행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샘플링 조사로 전체 납세자의 대표 샘플에 대한 무작위 추출 조사(random audit)를 실시하여 신고성실도평가 관련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신고성실도측정지수인 DIF(Discriminant formula)를 보완하는 것이다. NRP는 자료수집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샘플로 선정된 신고서 내용의 사전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납세자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한다. 즉 TCMP가 샘플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한 무차별적 광범위한 조사로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선별 조사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국 국세청은 NRP 조사 분석결과를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탈루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선택적 집중조사를 통해 조사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¹¹⁾

우리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타당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신뢰성을 높이는 쪽에 비중을 둔 경향이 있었다. 과거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였다.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는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선정방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의 NRP를 2006

9) IRS는 다양한 행정해석을 하는데, 이 중 '재정규칙'은 거래에 대한 과세 측면을 논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은 없으나 IRS의 공식견해로 해석되며, '질의회신'은 모두 공개되어 국세청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한다.

10) 이론적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행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Allingham과 Sandmo(1972)가 있다. 범죄경제학의 구조를 활용하여 탈세행위를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으로하고, 납세순응행위는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가정하여 납세자와 세무 당국간에 관계를 살펴본 이론이다. Allingham · Sandmo,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2, pp. 323-338.

11) 국세청, 2006년 1월 20일 보도자료 4면의 자료를 인용<<http://www.nts.go.kr/news/>>.

년도에 도입하였다. 즉 외형 300억원 미만의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업 116명에 대한 성실도 검증차원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나. 영국의 세금계산서 제도

영국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공급자 또는 과세공급을 의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를 말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의도하는 자로서 개인과 기업,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 기타의 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업자는 총매출액이 연간 등록한도에 도달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으로 등록되며, 특정 업종의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국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우리와 상당부분 유사하다. 즉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의 구조이며, 원칙적으로 매 분기마다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소비세가 부가가치세제를 택하고 있기에 세금계산서(Tax invoice)와 같은 영수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매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 공급가액이 1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간이 계산서(Retailers invoice)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¹²⁾

다. 소결

우리나라에서 세액은 과세표준에 소정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먼저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서 다시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그렇지만 조세가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조적을 갖춘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도적 제약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되는 민간부문(혹은 사기업경제)에서는 조세는 법률로 강제되고 있어 하나의 제약이 되는 것이다. 민간부문은 경제상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는 기능을 하는데, 조세는 이와 같은 민간부문의 자원배분을 교란할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2015년 정부의 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발표되었고, 2016년 6월말

12)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자료 참조<<http://www.hmrc.gov.uk/>>.

까지 유예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소비자는 특정한 상품의 소비시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품의 최종 가격은 당해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비과세 되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과세가 어떠한 형태를 채택하던 간에 본래 소비자가 바라고 있던 소비방법을 교란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고 만다. 고전적 경제학파들도 정부활동의 적극적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공지출의 규모, 조세에 의해 조달되는 액, 공채발행 등으로 활용되는 정책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국정운영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조세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 경제안정을 저해되지 않는 형태로 과세되어야 한다.

Ⅲ. 소비자상대업종과 조세의 문제

1. 세무조사 대상의 항목

세무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먼저 수입 금액에 관한 조사, 필요경비에 관한 조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가 있는지의 여부, 마지막으로 공제와 감면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로 구분된다. 이는 매출 누락이나 비용의 과대 계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감면받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거래에 관하여는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각종 증빙 자료를 전표와 함께 보관할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29조 제1항).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성실신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의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 불로소득자와 탈세 혐의가 있는 자료, 현금 수입 업종 등 상대적으로 실소득 대비 신고소득률이 저조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무조사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소신고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만 법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두고 있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

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 기간의 6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다. 이렇듯 성실신고확인 내용에 따라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0만원 한도 내).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3년 12월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설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였고, 2004년 9월 현금영수증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1.16~12.15)을 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9년 9월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제도의 실시 등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소비형태와 시장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과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투명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하여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한’ 내에 반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발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발행(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되는 대상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건당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한다.¹³⁾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1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가산세가 5,000원 미달이면 5,000원이 부과된다. 이러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시정명령관할 세무서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조세법 처벌법 §17 1호 다목).

소비자상대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의무발행현금영수증 발급의무란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을 뜻하며, 이때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회사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세법상으로 업종별 차이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상대업종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 대상업종을 말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없다는 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 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동일한 업종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가 적은 편이다. 또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부가세법 제26호 서식에 따라 순수 현금매출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현금영수증 제도의 추진 현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2016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임에도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 흔히 발생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사례를 소개하자면 ① 우선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50%가 부과된다.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과태료로 해당금액의 50%가 부과된다. ②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50%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③사전 계약내용 및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을 나누어 1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해당하여 합산한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업 등의 사업서

비스업,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등의 보건업, 유흥주점업 등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습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총 47개다. 2016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여기에 5개 업종이 추가로 포함된다.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호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 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일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회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운송업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이후 추가예정인 업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가구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IV. 조세체계에서 소득에 대한 구조적 변화

1. 소득과 재분배의 기능

소득이란 일정기간동안 다양한 출처로부터 개인, 가계 혹은 기업에 유입된 현물소

득 또는 금융의 흐름을 의미한다. 소득의 일부는 소비 및 세금을 통하여 재분배 됨에 따라 일차적 소득분배로부터 이차적 소득분배가 발생한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재분배의 기능은 경제적 번영으로 이루어지기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재분배의 기능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하락하는 반면, 기업소득은 2000년 17%에서 2012년 23%까지 상승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소비도 동반하여 부진하였다고 평한다. 우리는 내수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가계소득 증진을 위해 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시도하지 않았는데, 당시 과도한 임금상승은 경영의 압박으로 이어져, R&D와 같은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경기가 침체되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반대의 논리가 유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조세체제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향후 복지국가로의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최근 진보적 소득세 체제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정한 출발, 공정한 수요, 공정한 성과를 합의하고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를 하자는 내용이다. 즉 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성 보다는 공평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발전해온 정부 및 대기업 중심의 발전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향하자는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이 많은 기업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에게는 소득분배를 통한 기능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정책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다해가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통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과거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토마스 페인, 제임스 미드 등)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복잡적이면서도 다층적 관점이 필요하고, 정치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실행하기 힘든 극단적 이유가 있다.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소득의 보편적 보장은 경제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킴으로써 의욕 상실을 일으키거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시 정당한 루트를 이탈하여 지하경제로 숨어들게 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조사의 관점을 기능적 소득분배뿐만이 아니라 인적 소득분배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기준의 재정립

국세청에서는 여러 모형의 집단을 선정(하나의 가계 또는 자영업자)하여 그 수입의 총합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가계 소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임금과 같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생산요소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기능적 소득분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막스 로렌츠(1905년)는 소득 활동을 하는 인구 가운데 특정한 몇 퍼센트를 x축에 놓고, 전체 소득에서 얼마만큼의 부분을 차지하는 지를 y축에 놓는 곡선을 제시한 바 있다.¹⁴⁾ 흔히 경상도 지방에서 울산지역이 소득수준이 높아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울산지역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한국은행이 발표(2012년 기준)한 바에 따르면 5,437만원이며, 전국 평균인 4,475만원을 상회한다. 월천별로 구분하자면 근로소득(73%)과 사업소득(19.6%)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재산소득(3.7%) 비중은 낮게 발표되었다. 따라서 로렌츠곡선에서는 전국보다 위쪽에 위치해 전체적인 소득분포가 전국보다 더 균등하게 나타난다. 즉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 자본의 축적량이 적은 울산시민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은퇴시점이 가까운 장년층과 주축인 40-50대의 은퇴시점을 고려한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위의 로렌츠곡선을 예로 들었지만, 경제학적 방법론들이 현대 법학에 있어서 주요한 논거가 되는 것은 세법 해석에 있어서는 시대적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오로지 철학이나 사상이 연계된 순수한 원칙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도덕과 관련한 주요 거래행위들은 대체로 의무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제된다. 법에 의한 지배, 법지배하의 정부가 적용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부패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패는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며, 처벌 없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주체에게 부당한 이득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프란츠 뵘(Franz Böhm)은 법치국가를 이루기 위한 요건으로 자유질서정책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국가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문화적 성과로 불렀던 것이다.

14) Christian Damgaard · Jacob Weiner, "DESCRIBING INEQUALITY IN PLANT SIZE OR FECUNDITY", *ECOLOGY* vol 81. Issue 4, 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 2000, pp. 1139-1142.

3. 조세회피에 대한 비효율과 세법의 방향

앞에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세계개혁 논쟁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조세구조의 기본적 개혁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주제인 과세베이스 확대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전통적인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세지출 정비의 타당성과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나아가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보다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조세회피 및 비공식 부문 축소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기존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것도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일이겠지만 기존 과세베이스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일차적 과제가 현금영수증 제도라 생각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 세계개혁의 핵심 화두는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었다. 이는 1970년대까지 유지되던 높은 한계세율과 다양하고 복잡한 비과세, 감면의 소득 과세체계가 초래한 비효율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경우 석유 파동과 같은 외적 요인도 있었지만 생산성 저하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했다는 인식이 강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조세가 노동, 저축 및 기업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었다. 1980년대 들어 다수 서구 국가들은 대대적인 세계개혁을 단행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과세베이스를 좁히면서 다양한 비효율의 원천이 되는 조세지출을 줄이고 대신 세율을 낮추어 주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개혁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이론적 기반이 있었다. 전통적인 누진세율 체계가 사회 구성원의 한계효용을 동일하게 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효용학파적 사고에 근거했다면 최근 조세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론들은 높은 세율이 초래하는 행동 왜곡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구체적으로 모형에 담는다.

일반적으로 현금경제의 비중은 금융시장의 발달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정보는 주로 금융거래나 회계장부 등의 증거를 통해 확보된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기업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이나 금융수단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금융 부문 자체가 성숙할 필요가 있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 증권, 회계 관련 회사들이 충분히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는 순편익이 현금을 사용해 세금을 피하는 것보다 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안은 금융거래 자체가 세금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금융기관이 이 세금을 수수료 등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수요자에게 전가시킨다면 이 세금은 금융기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정도의 과도한 금융 과세는 현금경제 비중을 높여 조세회피를 조장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현금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방법 중 하나가 1990년대 말에 제도화된 신용카드 조세 혜택이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현금 사용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있다. 이후 연관조치로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도 유사한 조세 지원을 포함한다. 최근 들어 더 이상 신용카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다른 의사결정처럼 신용카드 대 현금 사용 여부도 한계 편익과 비용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상관없겠지만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한계 선상의 경제주체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가 현금사용을 장려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V. 결 어

2016년 3월 23일 계좌이체로 받은 변호사 수입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변호사 A씨는 계좌이체로 받은 수입료 1억 1천만원에 대해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이 과태료 5천 5백만원을 부과하자 계좌이체는 현금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사건은 계좌이체를 현금 거래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렸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계좌이체에 따른 수입을 현금 거래로 보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세원의 투명으로 합리적인 형평과세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과세를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금거래에 따른 자영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밝히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경제분야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과제였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계과세(인정과세)에 의한 과세권의 남용을 지양하고, 신고납세 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조세정의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무산되기 쉽다. 조세법률주의도 형식과세의 원칙이 기초가 되며, 실질과세의 원칙은 이 기초적 원칙을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발휘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봉급생활자의 소득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투명하게 노출되고 고소득 전문자영업자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현행의 실정조세법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개선과제를 통해 현금영수증제도가 투명하게 정착되고 활성화됨으로써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이로써 근거과세를 함으로써 형평과세가 이룩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김동희, 「행정법강의」, 신조사, 2013.

박균성, 「행정법 기본강의」 제8판, 박영사, 2016.

이동식, 전훈, 김성배, 권세훈, 「행정법총론」 제4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12.

이동식, 「일반조세법」 제3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이창희, 「세법강의」 제14판, 박영사, 2016.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주)마크로밀엠브레인(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화폐 및 현금영수증 이용 관련 U&A 조사”, <리서치보고서> 2012권4호, 2012.

Allingham · Sandmo,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2.

Christian Damgaard · Jacob Weiner, “DESCRIBING INEQUALITY IN PLANT SIZE OR FECUNDITY”, ECOLOGY vol 81. Issue 4, The Ecological Society of Americam, 2000.

<web-site>

<http://news.kbs.co.kr> (한국공영방송)

<http://www.kostat.go.kr> (통계청)

<http://www.nts.go.kr> (국세청)

<https://www.irs.gov> (미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영국 관세청)

<Abstract>

A Study on the cash receipts obligatory issue of business operating for the consumer sectors

Kim, eunsu*

Recentl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have established the policy to regulate sales activities within the ballpark, especially so-called Beer Boy's removable beer sales at the ballpark, and delivered this policy to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The regulatory purpose is to violate the Liquor Tax Law that liquor should be sold only in the licensed place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urchase of beer is included in the baseball watching culture that has continued for 35 years since 1982, baseball fans protest that they prohibit the sale of alcohol suddenly and regulate the watching culture for the reason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selling alcohol to the you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fter reviewing this issue, eventually reversed its previous position by asserting that sales activities of reported ordinary restaurants are within acceptable interpretation range of Food Sanitation Law because they make on-site sale of food for customer's convenience targeting the visitors within a limited ballpark.

The regulation on Beer Boy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looks reasonable. But in the part of the fans who have purchased removable beer at the ballpark for 35 year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is, this case can be seen as the conflict with priority practices and the laws in the real world.

While it's not easy to change the practice that has been continued for 35

* Ph.D.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Liberal Arts for Law and Politic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years, it will be a real challenge to change the system related to economic life. Cash receipt, the theme of this paper, is the system introduced because businesses have not reported their income properly.

In this paper, the necessity of private business preventing disadvantages caused by non-compliance with cash receipt obligatory issue and the benefits of tax credits of value added tax and income tax will be examined.